

안건번호	제25-17호 (제464차 이사회)
보고년월일	2025. 12. 26.

보
고
사
항

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제 출 자	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획조정실장 김 용 한
제출년월일	2025. 12. 26.

1. 제461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시 : 2025. 11. 21.(금) 11:00

나. 회의장소 : 여의도 태흥빌딩 7층 1회의실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0명 중 9명 참석

라. 회의결과 : 보고사항 1건 원안접수, 의결사항 13건 원안의결

구분	안전번호	안전명	회의결과
보고 사항	제25-16호	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	원안접수
의결 사항	제25-40호	사장 경영성과협약안	원안의결
	제25-41호	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42호	취업규칙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43호	채무부담행위의 종류 및 한도 승인안	원안의결
	제25-44호	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45호	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46호	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47호	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48호	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 일부개정약관안	원안의결
	제25-49호	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(사용검사후) 일부개정약관안	원안의결
	제25-50호	주택사업금융 모기지보증약관 일부개정약관안	원안의결
	제25-51호	유동화회사보증규정 및 약관 제정안	원안의결
	제25-52호	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금융보증규정 및 약관 제정안	원안의결

마. 주요 경영제언 및 조치현황

제언사항	조치현황
○ 공사 직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필요 [국경복 이사]	○ 직급별 AI 활용 교육 실시, 단기 AI 교육과정 및 전일제 석사학위 과정 지원 예정
○ 규정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명확한 문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[심오택 이사]	○ 사규 정비 관련 교육 강화, 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위한 내부 공모전 실시 등 정기적 점검·개선 추진
○ 전자계약 건 보증료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, 홍보 대상에 공인중개사를 포함시킬 필요 [심오택·김성수·윤호진 이사]	○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공사 홈페이지 등 안내(완료), 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 배포 및 한국부동산원 협업 홍보 추진

2. 제462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자 : 2025. 12. 12.(금)

나. 회의방법 : 서면결의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0명 중 9명 서명하여 적법하게 결의됨

라. 회의결과 : 의결사항 2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의결 사항	제25-53호	2026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안	원안의결
	제25-54호	중장기경영목표 변경안	원안의결

3. 제463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자 : 2025. 12. 18.(목)

나. 회의방법 : 서면결의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0명 중 8명 서명하여 적법하게 결의됨

라. 회의결과 : 의결사항 1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의결 사항	제25-55호	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목적 변경안	원안의결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별첨

나. 조치사항 : 이사회 회의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
(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시스템)

【별첨】

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

제6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 공개)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□ 이사회규정

제8조 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한다)
3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
4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